

문서번호 지콘협1310-01

발송일자 2013. 10. 28

수 신 국민권익위원회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결 재	
	번호		
처리부서		공 람	
담당자			

제 목 한글폰트 사용료 청구의 부당성과 지속적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의 청구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지식콘텐츠기업협회는 온라인 지식·학습콘텐츠(이러닝)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3. 최근 한글폰트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로부터 본 협회 회원사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영세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업영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1) 한글폰트 라이선스 사용료의 타당한 기준과 정당성 부재

-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위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의 정당한 가격과 사용료는 해당프로그램의 사용용도와 범위, 활용하여 생산한 목적물이 가지는 수익적 가치와 이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되어야 함.
- 그러나 최근 한글폰트 업체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은 폰트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재하였던 과거의 사용결과물에 대해 상기의 기준을 고려한 타당한 라이선스 사용료가 아닌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음.
- 심지어 해당 한글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이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2) 기여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사용료 산정

-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래픽, 문자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러닝 콘텐츠개발에 있어 한글폰트 프로그램은 문자생성시 가독성과 미관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보조도구임. 전체 콘텐츠제작에 있어 한글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의 필요성과 기여가치가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러나 한글폰트 저작권 보유 업체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5백~8백만원에 이르는 라이선스 위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폰트별로 합산할 경우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
- 또한 기존 사용분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후에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폰트 패키지(1년~5년 사용권)를 신규 구매와 PC/디자이너당 폰트프로그램을 추가구매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이러닝콘텐츠 제작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인 포토샵, 프리미어 등의 가격에 십 수배에 이르는 고가로서 합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3) 부당한 라이선스 사용료 청구 대상

- 본 협회 회원사는 이러닝 콘텐츠를 사용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발용역을 받아 납품하는 기업들로서,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지 않는 단순 용역업무 수행 기업들임. 개발 납품된 콘텐츠의 소유권, 서비스 및 유통사용권과 이에 따른 수익은 모두 발주자에 귀속되는 사항임. 즉 해당 한글폰트의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자는 발주자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들은 한글폰트를 사용한 콘텐츠의 서비스 사용료까지 수익자가 아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으며, 소유권자가 유통하여 이러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이트마다 해당과정의 운영기간 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음. 또한 향후 개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작용 라이선스와 서비스용 라이선스를 함께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일체로 묶어서 콘텐츠 개발기업에게 판매하고 있음.
- 이러닝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실제 수익자인 발주자가 아닌 단순납품 기업에게 서비스라이선스 사용료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임.

4)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 및 책임전가

- '갑'의 지위인 이러닝 콘텐츠 발주기관들은 저작권관련 분쟁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콘텐츠 개발 계약 시 '해당 이러닝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관련 문제는 '을'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여

왔음.

- 정당한 저작권 관련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콘텐츠 유통과 서비스의 수익자인 발주기관들은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갑'의 사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저작권 관련 모든 문제는 무한정 '을'이 책임지도록 강요하여 왔음.
- 이러한 부당한 불공정계약을 근거로 법무법인들은 아무런 사용수익이나 권한 없이, 단순히 개발용역만 수행한 콘텐츠 개발 기업에게 서비스사용료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최근 한글폰트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자 발주기업들은 콘텐츠 개발 하청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구 저작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개발비의 인상 없이 모든 비용을 영세기업에게 또다시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임.

5) '을'의 사업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적 지불 요구

- 법무법인들은 '갑'인 콘텐츠 발주기관들을 압박하여 '을'인 콘텐츠개발 납품기업들이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폰트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콘텐츠 개발기업들의 사업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무법인들이 수익을 올리자, 각 폰트별로 건건이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저작권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시장위축과 불경기로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닝콘텐츠 개발기업들에게 반복적인 폰트별 저작권료 지급요구는 정상적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6) 한글폰트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노력 및 홍보 부재

- 대부분의 한글폰트는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Font폴더에 생성되며, 사용자는 한글폰트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해당 폰트를 Photoshop, Illustrator, Flash 등에서 사용하게 되어 라이선스를 위반하도록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 위반 사례는 대부분 이러한 유도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
- 만일 해당 한글폰트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면, 한글 워드프로그램 이외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적인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적어도 라이선스 위반 경고 문구라도 생성되도록 하여야 했음.
- 사용권자의 저작권 보호 노력과 상품홍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된 한글폰트에 대해 불법에 대한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과도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항정을 만들고 이에 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기려는 부도덕한 행위임.

7) 이러닝콘텐츠 개발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상황

- 우리 협회의 회원사들은 대부분 임직원 수 20명 내외의 영세기업들로서 최근 수년간 이러닝 시장환경 악화와 저가용역으로 인해, 많은 회원사 및 관련 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용료 지불요구와 고가의 패키지 추가구매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나. 민원청구의 필요성과 취지

1) 필요성

-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가 지속될시 이러닝 및 지식콘텐츠 개발기업들은 무료로 공개된 한글폰트 만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콘텐츠 품질을 저하시키고 최종 수요자인 학습자의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또한 무료폰트의 사용증가는 한글폰트 제작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수익성 및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부처, 저작권자, 사용자, 학계전문가 등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본 문제를 공론화 하고 정당한 폰트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취지

-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한글폰트 라이선스 정책 및 가격 합의안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문제의 지속적 제발을 방지하고, 지식콘텐츠기업과 한글폰트기업간의 상생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구하고자 본 민원을 청구함.

다. 민원청구 사항

- 1) 한글폰트의 이러닝콘텐츠 기여도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2) 법무법인들의 한글폰트 저작권 관련 과도한 사용료 요구, 불법조사, 고가 패키지 강매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 3) 라이선스 및 저작권 관련 법률해석 및 유권해석 제공
- 4)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과 제도마련을 위한 유관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

붙임. 한글폰트 저작권 관련 회원사의 피해사례 및 해당기업의 의견 1부. 끝.

지식콘텐츠기업협회

관인
생략

우 431-8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B동 727호 / 당 당 상임이사 길종원
전 화 031-341-1100 / FAX 031-423-3653 / E-Mail : hunawon@naver.com / 비공개

붙임.

한글폰트 저작권 관련 부당한 합의금 요구 실태 및 해당기업의 의견

이러닝 관련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1)			
법무법인	H, J, Y, C	저작권자	산돌커뮤니케이션, 윤디자인, 세종, 아시아
관련폰트	산돌체, 윤체, 소주, 번개	이러닝 과정	약 30여개 과정
진행내용			
문제발생 경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6월 24일 : 저작권 침해관련 통보 수신 - 고객사(I)를 경유하여 한글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통보를 받음. → 침해건수 : 23개 과정(산돌체 6종, 윤체 4종) • 2010년 6월 26일 경 : 법무법인 H와 유선통화 - 통해 웹용 폰트저작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저작권 침해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함. - 법무법인 측에서는 웹용 폰트는 상용이 아니며,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며, 이러닝 서비스로 발생한 수익금의 10배의 배상을 언급함. • 2010년 6월 28일 : 법무법인 H 방문 이모 사무장 미팅 - 배상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총 4천6백만원의 과도한 금액요구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 • 2010년 7월 7일 : 저작권자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을 직접 방문 - 수익성이 낮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상금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 2010년 7월 7일 : 저작권자인 윤디자인과 통화 -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폰트 라이선스 기준이 없어 협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 2010년 7월 19일 : 내용증명 수령(법무법인 H) -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 불이행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 수령 • 2011년 10월 17일 : 법무법인 J으로 부터 저작권 위반 통보 - 고객사(C)를 통해 산돌체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 위반사실 통보 받음. • 2011년 12월 1일 : 산돌체 1년 사용 라이선스 구매 -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조건으로 라이선스 구매 • 2013년 6월 7일 : 내용증명 수령(법무법인 Y) - 1개 과정, 1폰트에 대한 한양체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수령 적발된 1건 및 과거사용분에 대해 총 600만원 지불 요구함 • 2013년 8월 20일 : 내용증명 수령(법무법인 C) - 9개 과정, 3개 폰트 저작권 위반에 대한 확인 내용증명 수령함. 		

<p>법무법인의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6월 경 : 법무법인 H, 총 4,600만원 합의금 요구 - 과정당 200만원 23개 과정, 총 4,600만원의 적발건에 대한 합의금 및 라이선스 추가 구매를 요구함. • 2013년 6월 경 법무법인 Y, 총 600만원 요구 - 한양체 사용 1건의 합의배상금 100만원, 과거 이용전체에 대해 문제시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함. • 2013년 8월 : 법무법인 C, 폰트저작권 위반사실 확인 요청 - 아직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요구하지 않음.
<p>협상내용 및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2월 1일 : 산돌커뮤니케이션 측과 500만원에 합의 - 저작권자인 산돌커뮤니케이션과 2년간의 직접 협의과정을 거쳐 1년 사용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라이선스를 500만원에 구입하고 과거의 저작권 위반건에 대해 면책하기로 합의함. * 1년 사용 라이선스 외에 프로그램을 PC별로 추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이후로 산물체를 쓰지 않고 있음. * 기타 2013년에 제기된 저작권 위반 관련 건들은 미해결 상태임.
<p>피해기업 의견</p>	<p>1) 이러닝의 용도 및 수익자에 따른 폰트 저작권의 정의와 상품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폰트 저작권 업체는 이러닝의 제작과정에서 폰트가 차지하는 비중, 제작마진, 서비스 및 유통수익 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이를 고려한 라이선스 상품이 없음. <p>2) 폰트업체의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노력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트 프로그램의 이러닝사용에 대한 적합한 상품제공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노력이 거의 없었음. 이로 인해 웹용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악용해 지난 사용건에 대해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음. <p>3) 법무법인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반복적인 저작권 분쟁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물체 다음에는 윤체, 그다음은 한양체 또 그 다음은 이미지, 캐릭터, 사운드 등 법무법인들은 반복적으로 유사 저작권 사건으로 이러닝콘텐츠 개발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닝 관련 라이선스 정의나 합당한 상품구성이 없음. 이로 인해 가뜰이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

이러닝 관련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2)			
법무법인	Y	저작권자	한양정보통신
관련폰트	울릉도체	이러닝 과정	1 개 과정
진행내용			
<p>문제발생 경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5월21일 : 법무법인 Y, 고발조치 내용 메일 수신 - 한양 울릉도체의 발주사인 S기업에게 근거를 확인하여 불법사용에 대한 고발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그간 사용한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함. 		
<p>법무법인의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 1개 과정 1개 글자(제목글자)에 대한 1개 서체 사용료 및 위반료로 100만원을 요구(이 경우 다른 과정에서 사용된 것 발견 시 동일 횟수대로 동일 적용) • 2안) - 폰트 패키지를 800만원에 구매할 경우 이전 타 과정에 사용된 것까지 모든 한양체를 사용한 과정 소급 면제, 단, 라이선스 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이러닝 용도로 재계약해야 함. 		
<p>협상내용 및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사항 : 600만원에 구두 합의 - 요구사항 2안을 기준으로 요구 금액과 조건이 불합리하여 지속적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폰트 패키지 구매가격을 600만원으로 낮춰서 2회에 걸쳐 지급,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받음. • 합의파기 : 기준 및 일관성 없음을 확인하고 합의를 파기함. - 합의금 지급일 즈음 타 업체 협상가를 확인하니,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것을 알고, 일관성 없음 및 부당성을 제기하고 합의를 파기함 - 2013년 7월4일 내용증명, 7월17일 최고서 수령하고 이후 진행은 보류중임. 		
<p>피해기업 의견</p>	<p>1) 비 상식적인 폰트 저작권료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과정 1개 폰트 사용 및 위반료로 100만원 또는 800만원은 매우 높은 금액임, 한양체 목향 4.0 패키지 정식 구매시 사이트 660,000원, 쇼핑몰 지마켓 593,000원에 구매 가능함. <p>2) 이러닝에 맞는 라이선스 상품 자체의 부재 및 사용료 요구의 적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트 정품 구매를 2012년 12월에 진행한 산돌과 윤 프로모션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무법인에서는 진행계획이 없다고 함. 업체와 협의가 필요함. - 800만원의 목향 패키지 구매로 합의할 경우, 이러닝 라이선스 기간은 1년으로 하여 주겠다고 함.(법무법인의 말로는 1년만 제한을 둔 것은 이러닝의 제작으로 한 것이며, 패키지 용도는 문서작성, 편집, 인쇄용도라고 함. 이러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이러닝의 용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한양체 저작권자에게 제작할 때마다 제작하는 과정명을 제공하여, 제작하는 과정명을 저작권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이 건은 산돌이나 윤에서는 없었던 조항임.) - 프로그램 패키지의 용도에 이러닝이 없다면, 법적인 저작권 위반 기준이 모호함 		

피해기업 의견	3) 법무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악의적 저작권분쟁 이용
	- 법무법인 Y의 현 사무장은 작년에 산돌 서체 위반건으로 합의를 해줬던 법무법인 J의 사무장으로, 하청을 받는 영세개발업체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법무법인을 옮겨 다니며 개발업체를 압박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
	4)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이더닝콘텐츠 개발계약
	- 본 콘텐츠는 2006년 대기업 발주를 통해 제작되어, 공공기관에 납품된 과정으로 2013년까지 운영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소유권 및 운영권 관련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영세하청 납품업체가 저작권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진행되었음.
	- 용역만 제공한 콘텐츠 개발업체에게 무한정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책임기한을 유지보수 기한까지로 한정해야 함(통상 1년).
5) 폰트저작권 등록 이전에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와 배상요구는 부당	
- 폰트저작권이 등록되기 이전인 2006년에 개발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음. 그때는 저작권 개념도 없었고, 무제한 무료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합리적인 법적용과 해석이 필요함.	

이더닝 관련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3)			
법무법인	Y	저작권자	한양정보통신, 산돌커뮤니케이션
관련폰트	HY서체, 산돌체	이더닝 과정	1개 과정
진행내용			
문제발생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5월 초순 경 : 법무법인 Y로부터 사실 확인 및 고소고발 계획 통지 - 발주사인 H사로 부터 법무법인 Y이 한글폰트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왔음을 알리는 전화연락을 받음. - 이후 발주 및 서비스사로 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한 법무법인 Y이 당사에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계획을 알리며 사용료를 요구함. • 2013년 10월 15일 : 법무법인 C로부터 민·형사사 법적조치 계획 통고 - 원 발주자인 A사에게 불법사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계획 통고함. - 이를 다시 하청기업인 B사에게 통지하여 해결을 촉구하고, B사는 다시 재하청 개발기업인 당사에 통지하여 해결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 		
법무법인의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5월 제기된 건 - 법무법인 Y가 한양체, 산돌체 폰트의 과거사용 배상금 1,600만원과 향후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구매비로 1천만원을 요구받음. • 금년 10월 15일 제기된 건 -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협상경과 및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5월 제기된 건 - 지난 사용분에 대한 청구소멸 및 면책건에 대해, 금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300만원을 할인받아 금년 6월 10일에 각 500만원씩 1천만원에 합의함. - 추가로 현 시점이후의 산돌체 폰트사용을 위해 애초 요구가격에서 200만원을 할인 받아 1년 사용 라이선스를 구매함. * 이후 라이선스를 구매한 산돌체 사용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프로그램은 PC별로 수백만원씩 지불하고 추가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는 산돌체를 쓰지 못하고 있음. 		
피해기업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청 납품기업의 불리한 사업적 지위를 악용한 사용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과의 지속적 사업을 고려해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개발기업의 입장을 악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강요함. 2) 근거 없는 사용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한 금액의 산정기준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고 발주기관에 대한 압박, 고소고발 언급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감. 3) 이더닝용 제작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 라이선스도 강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하지 않는 콘텐츠 단순납품기업에게 제작용과 서비스용 라이선스를 묶어서 비싼값에 강매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유통을 하지 않는 단순 납품기업에게는 제작용 라이선스를 따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맞다고 생각함. 		

피해기업 의견	<p>4) 라이선스 구매 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 구매를 요구</p> <p>- 라이선스는 허가일 뿐 사용하려면 추가로 프로그램 CD를 PC별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라이선스가 함께 따라오는 것인데,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또 판매하고 있음.</p>
------------	---

이러닝 관련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4)			
범무법인	M, W, H, C	저작권자	윤디자인, 아시아소프트, 산돌커뮤니케이션즈, 한양정보통신
관련폰트	윤서체, 산돌체, 아시아폰트, 한양체	이러닝 과정	
진행내용			
문제발생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5월 25일 : 범무법인 우산으로부터 윤서체, 아시아체, 코헬드로우 관련 1차 정품확인 내용증명 수신 - 2010년 7월 19일 : 범무법인 H 저작권 침해 확인 내용증명 수신 → 합의하여 구매의사가 있음을 회신 - 2010년 12월 20일 : 범무법인 W로부터 2차 정품확인 내용증명 수신 - 이후 범무법인의 형사고발 및 검찰 조사 진행 - 2012년 11월 12일 : 저작권자(산돌, 윤디자인)과 이러닝 관련 협회(이러닝산업협회, 이러닝기업연합회)간의 폰트 프로그램 판매 이벤트 실시 및 이벤트 참가기업에 대한 면책 합의 		
범무법인의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트사용 이러닝 과정별로 수백만원씩의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함. 		
협상경과 및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닝 과정 당 저작권료 수백만원의 저작권료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합의를 않음. - 이에 범무법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당사를 형사고발하여, 검찰조사가 진행됨. 이후 이러닝산업협회명의로 폰트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여, 폰트 공동구매 및 과거사 용에 대한 면책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함. 		
피해기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트가 저작물이 아닌, 소프트웨어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산출물 당(과정 당) 저작권료를 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임. - 2012년 11월 이러닝산업협회에서 진행한 한글폰트 공동구매 프로모션에서 책정된 가격과 라이선스가 과연 적절한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닝산업협회는 한글폰트프로그램의 주 사용자인 이러닝콘텐츠 개발기업이 아닌 이러닝서비스기업들의 협의체로서 공동구매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콘텐츠 개발기업들이 많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이러닝용 폰트상품에 대한 합의와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